



제 4 1 7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정보도청구의 기한 연장 등〉

■ 정청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8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 연장	3
2.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 규정	6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	10
4. 언론사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12
※ 참고자료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5. 31.

다.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음.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비율은 88.37%로 거의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정정보도·반론보도의 효과도 피해를 회복하기에 미미한 수준이어서 보완이 필요함.

미국의 경우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3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 연장(안 제14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와 이를 준용하는 관련 기한을 언론보도등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u>3개월</u>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u>6개월</u> 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 ----- ----- ----- ----- <u>1년</u> ----- ----- ----- ----- ----- ----- ----- ----- <u>2년</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 언론보도등: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법 제7조제1항)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정정보도 청구의 기한을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준용하여 반론보도 청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손해배상의 조정신청 포함), 정정보도청구등²⁾의 소 제기에도 동일한 기한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매체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변하며 언론보도등의 유통기한이 길어지게 되면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의 청구 기한이 지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단기의 제척기간으로 인해 동법에 따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실정³⁾으로, 이에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등의 기한을 현행의 4배로 연장하여 동 법률에 따른 피해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임.

[표 1]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기간도과 상담 및 각하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 담	전체 건수	3,292	3,336	3,863	3,329	3,995
	기간도과 상담 건수	73	71	112	155	159
조 정	전체 건수	3,544	3,924	4,278	3,175	4,085
	기간도과 각하 건수	45	28	71	185	110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2024. 7.

2) 정정보도청구등: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법 제17조의2제1항)

3) 지난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는 “일반인의 경우 자신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지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은 경우도 있고, 정정보도등을 청구하거나 중재 신청, 소 제기 등의 절차를 수행할 경우 이를 위한 사실조사, 반박자료 수집 등을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나 현재의 청구기한은 실무적으로 관점에서 촉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 (제388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2021. 6. 30.)

다만, 동 법상 청구기한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규정된 것은 고의·과실, 위법성을 묻지 않고 정정보도 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입법취지가 있었다는 점, 동 법률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며, 아울러 기한 연장에 따른 분쟁 증가는 언론사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언론의 공적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⁴⁾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음.

따라서,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및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측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의 기한을 연장할 경우 보도 원본 등의 의무 보관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5조제7항⁵⁾ 및 제8항, 「방송법」 제83조제2항⁶⁾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한국신문협회 등은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쉽게 뉴스 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청구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기간 연장은 언론사를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임.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6)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사등⁷⁾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에 관한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② (생략)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u>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u>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그</u> ----- ----- ----- ----- ----- ----- ----- -----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 -----

7) 언론사등: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법 제14조제1항)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u>있다</u>. ②・③ (생략)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u>한다</u>. ③・④ (생략)	----- ----- <u>-있으며,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반론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하고,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방송하거나 <u>게재되어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언론사등이 정정보도 청구등을 수용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등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등의 방식에 대하여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

일반적으로 정정보도등은 원 보도문보다 작은 크기로 보도되거나 주목도가 비교적 낮은 지면 또는 시간대에 배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정보도등의 게재양식을 원 보도와 동일한 지면 및 분량으로 보도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정정보도등을 원 보도와 동일한 영향력을 갖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은 정정보도등의 게재 양식에 대해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정정보도등의 청구를 언론사등이 수용할 경우 원 보도 중 정정보도등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 보도와 동일한 분량으로 보도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원 보도가 재차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아 최소한의 정정·반론 보도만을 원하거나, 추후보도의 경우 청구인의 다수의 범죄혐의 중 일부만 무죄판결·불기소처분 등이 있어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만 정정·반론하기를 원하는 사례 등이 있을 수 있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정보도등의 지면·분량을 일률적으로 할당해야 하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이 제한을 받게 됨⁹⁾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게 하여야 한다.

9) 한국신문협회 및 방송사업자 등은 동일 지면·분량으로 규정한 정정보도등의 게재 양식에 관해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 정정보도등의 지면으로 주요 이슈 보도가 밀릴 경우 독자의 알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오보에도 원보도 분량으로 정정해야하는 것은 비례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임.

따라서, 정정보도등의 지면 및 분량 등에 관한 기준을 완화¹⁰⁾하거나 기준을 제시하되 이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피해자의 정정보도등의 청구 수용률이 저조할 경우, 후속 분쟁 해결 절차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법원 소송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사건 증가에 따라 피해구제가 지연¹¹⁾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표 1] 연도별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접수건수 및 평균처리일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접수건수	3,544건	3,924건	4,278건	3,175건	4,085건
평균처리일	18.1일	19.2일	17.9일	14.8일	21.1일

자료: 언론중재위원회

동 개정안 심사 시에는 정정보도등의 청구 거부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가 추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분쟁해결 절차의 적시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제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대안으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되, 정정보도등의 청구내용이 원래의 보도의 일부인 때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 및 크기보다 작게 할 수 있도록(다만, 이 경우에도 원 보도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함) 허용한 바 있음.

11)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 조정신청사건 접수는 2019년 3,544건에서 2023년 4,085건으로, 같은 기간 평균처리일수는 18.1일에서 21.1일로 증가하였음.

3.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보(안 제18조)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신청 내용을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생략) <신설>	제18조(조정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중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²⁾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내부 규칙에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이 기입된 ‘신청서 부분’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체없이 파악하고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는 데에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임.¹³⁾

1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할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핵심 사항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임.

[표 2] 유사 입법례

「민사소송법」

제255조(소장부분의 송달) ① 법원은 소장의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분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401조(항소장부분의 송달) 항소장의 부분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8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분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3)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2조(조정기일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사관은 최초의 조정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기록한 중재부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조정신청서에 적힌 당사자의 주소지에 세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한다. 이 때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부분을 함께 송달한다.

4. 언론사의 악의적 왜곡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안 제30조의2)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언론사의 악의적인 왜곡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검토의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2004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및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논

의가 진행되면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규정된 이후 특정한 분야의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규정된 분야는 상거래 행위, 개인정보 및 제조물 관리, 노동자 처우, 지식재산권 등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

[표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

분야	법률명	주관적 요건	한 도	대 상	도입 시기
공정 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당 발주 취소 등	20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허위정보제공, 상품·용역 공급의 부당 중단 등	20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20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상품 대금 감액,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 반품 등	20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20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부당한 사육자재 공급 등	2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5배	정당하지 않은 물품 수령 거부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2019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고의 중과실	5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5배	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15
소비 자 안전	제조물 책임법	고의	3배	제조물 결함에 따른 생명, 신체 의 중대한 손해	2017
	환경보건법	고의 중과실	3배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한 환경성 질환 등 손해	2018
	자동차관리법	고의	5배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2020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분야	법 률 명	주관적 요건	한 도	대 상	도입 시기
	등에 관한 법률				
	과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명백한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5배	중대재해 발생	2021
지식 재산 권 등	특허법	고의	5배	타인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5배	영업비밀 침해행위	2019
	디자인보호법	고의	3배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2020
	상표법	고의	3배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202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2019
공익신고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의 과실	3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	2017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최근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법¹⁴⁾에 따라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손해배상은 실제 인용되는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아¹⁵⁾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피해자 구제 및 악의적인 왜곡보도 방지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온 바,

개정안은 발생손해 외에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론보도 분야에 도입하여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입은 인격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취지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15) 2022년도 언론 관련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총 83건)의 평균 인용액은 570만원이며, 전체 인용 사건 중 손해배상액이 5백만원 이하인 사건은 63건으로 약 75.9% 수준임.
(자료: 「202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로 이해됨.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영역을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정하고, 손해배상의 요건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보도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엄격히 하였으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어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 명예훼손 등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¹⁶⁾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¹⁷⁾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는 점, ②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과도하게 강화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③ ‘악의적’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¹⁸⁾ 등을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¹⁹⁾

16)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1995.2.10.선고. 93가합 19069) 판결: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보통법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의하면서,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 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로 판시함.

18)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위원회의결된 바 있는데, 동 법률안은 “법원은 언론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명백한 고의 및 중과실에 대한 추정기준으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 바 있음.

19)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이 언론사 및 한국신문협회 등으로부터 제출됨.

따라서 언론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인 보도를 예방 및 처벌하여 언론사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처벌 강화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도입 여부 및 범위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 (2024.6.20)	• (제30조의2) 언론사의 책임성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과도하게 강화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악의적' 기준의 불명확성에 따른 해석 문제 발생될 수 있어 신중검토 필요

○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024.6.18.)	• (청구기간 연장) 국민의 피해구제 확대와 기간 연장으로 인해 언론사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균형있는 검토 필요 * 기간도과 관련 * 상담 건수 159건(전체상담 4%), * 각하 110건(전체조정사건 2.7%) • (정정보도 크기) 정정보도 내용이 원 보도 중 일부라도 원 보도와 동일분량의 의무화는 비례성, 실효성에 문제 여지, 또한 언론사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정제도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 검토 • (중재위 알림의무) 현행 제19조제2항 상 지체없이 출석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 출석을 요구, 실무상 접수 사실 즉시 고지가 이루어짐 •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에 대한 각계의 지적도 상당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한국신문협회 (2024.6.19.)	• (청구기간 연장)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쉽게 뉴스 유통·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현행 청구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안날 3년/불법행위를 한날 10년으로 규정되어 피해구제 면에서도 현행법에 의해 충분히 보장 가능 • (정정보도 크기) 법률로 정정보도 등의 게재 지면 및 분량과 크기를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 정정보도 지면으로 인해 보도되어야 할 국가적 이슈 보도가 밀린다면 독자의 알권리 침해 가능성, 해외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움, 비판보도에 불만을 품은 특정 단체·기관의 악의적 이용으로 보도활동 위축, 일반보도와 지면보도가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신문에 대한 차별적 규제 • (징벌적 손해배상)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의적 보도에 대한 형사절 처벌 등이 가능한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은 과잉규제 및 이중처벌 해당, 정치·안·공안·국가기관 등의 비판·의혹보도 봉쇄 수단 악용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6.18.)	• (청구기간 연장) 매체 및 플랫폼 다양화, 빠른 미디어 접근 능력 등 이의제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언론에게 부담은 가중되므로 현행 유지 • (징벌적 손해배상) 의혹제기성 기사 등 언론 위축 효과, 신설 불필요

○ 민간업계 의견

업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방송사업자 (SBS, MBC, TV조선, JTBC, MBN, 채널A, YTN, 연합뉴스TV)	• (청구기간 연장)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언론중재법 취지에 반함, 정정보도 청구가 언론사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불문하는 상황에서 청구기간 연장은 장기간 언론사를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는 점에서 방어권 제약, 장기 자료 보관·관리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방송법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보존기간(6개월)과 불일치 • (정정보도 크기) 방송프로그램 폐지·변경, 다큐 등의 1회 방영같은 방송 특성의 고려없이 일률적 적용 문제, 정정보도크기 관련 당사자간 협의절차 삭제로 언론사등의 정정보도청구 수용 감소 등 부작용, 원 보도 중 극히 일부인 경우에도 원보도 분량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우려 등 • (징벌적 손해배상) 정치적 악용 및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 우려, 소규모 언론사의 소송부담으로 탐사보도 등 감소, 과잉입법 우려, 기준이 되는 손해액이 모호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곤란, 법체계상 미국 사례 적용 부적절 등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 축소